

창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단117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10981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단1179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이재규, 전경민

피 고 B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6. 29.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21. 7.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D로 마친,

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E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6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김해시 F에 사업장을 두고 학교 및 병원 급식처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C에 2019. 12. 18.부터 2021. 7. 28.까지 돈잡육 등 축산물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45,479,670원이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2. “피고는 원고에게 45,47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2. 6. 11. 확정되었다(2022차전1425호).

다. C는 여러 거래업체와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2021. 7. 30.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2021. 7. 말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인도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의 양도 당시 C에 대하여 약 45,479,67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에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는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피고에게 특별한 대가를 지급받음 없이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C의 위 각 증여행위는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갑 9호증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2) 피고는, C의 대표이사 G(피고의 모)으로부터 C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양도받을 당시 C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기계를 대물변제로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양도받은 시점은 2021. 7. 30.인데,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C를 퇴사하기 전이었고,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도 위 자동차와 함께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기계의 양도 시점도 위 2021. 7. 30.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C를 대신하여 H, I, J에게 7월분 임금으로 합계 5,854,800원을 지급한 것은 2021. 8. 9.이다(을가 10호증). 피고는 같은날 K, L, M에게도 현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을가 1 내지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증여계약과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2021. 7.경 체결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그에 따라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과,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E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액이 9,500,000원인데, 그 중 별지2 목록 순번1 진공기(시가 500만 원 상당)는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피고가 C를 대신하여 H, I, J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합계 5,854,800원이어서, 적어도 위 기계 가액에서 위 임금 지급액을 공제한 3,645,200원(= 9,500,000원 - 5,854,8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만큼,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3,645,2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2 목록 순번1 진공기를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계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9,5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액에서 위 임금 지급액 5,854,800원을 공제한 잔여 가액이 위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가액배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